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984
------	-----

2023. 9. 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8월 9일, 유정희 의원(찬성자 14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9.11.)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유정희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공공미술관의 위작 구입 논란, 작품 구입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가격 상향 조정 논란 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논란의 여지를 사전방지 하고, 소장 작품 구입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미술관 자료 구입과 관련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8조의2 신설).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의 운영 및 미술관자료 구입·기증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 미술관 각종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22조, 제26조, 제28조의2)

-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은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자문 등을 하는 미술관자료추천회의, 수증심의위원회,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운영자문위원회 등을 두고 있음.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의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당사자, 친족, 학연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음. 또한 미술관의 자료구입·기증과 관련하여 미술관자료추천회의,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수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참여를 배제하고 있음.
-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직무 수행 시

사적이해관계 신고 등을 규정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였음.

-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와 시 직속기관·사업소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의 결격 사유를 포함하여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미술의 본연의 가치가 각종 화랑과 대행사의 로비, 특정 작가와의 학연·지연에 따른 불공정 심의 등으로 왜곡·훼손되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올해 4월에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현대미술관 특정감사에서도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방안 및 객관적인 심의 기준 등을 마련하라는 통보사항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의 입법 추진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미술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 제척·기피·회피를 조례에 직접 명시하고, 미술관의 소장품 구입을 위한 미술관자료추천회의와 가격평가심의위원회, 미술관자료 기증 시 수증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현행	개정안
	<p>1. <u>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u></p> <p>2. <u>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p> <p>3. <u>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u></p> <p>4. <u>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u></p> <p>5. <u>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학연 등의 이해관계로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u></p> <p>② <u>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p> <p>③ <u>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p> <p>④ <u>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정한다.</u></p>
(생략)	제22조(미술관자료 구입)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u>위원은 안건이 제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미술관자료추천회의 및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u>
(생략)	제26조(미술관자료기증)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설>	⑥ <u>위원은 안건이 제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u>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8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정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984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09일
발 의 자: 유정희 의원(1명)
찬 성 자: 김영철, 김원중, 김재진, 김춘곤, 박철성, 심미경, 아이수루, 유정인, 이종환, 이효원, 임종국, 전병주, 한·신, 홍국표 의원(14명)

1. 제안이유

- 최근 공공미술관의 위작 구입 논란, 작품 구입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가격 상향 조정 논란 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논란의 여지를 사전방지하고, 소장 작품 구입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미술관 자료구입과 관련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8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가격평가심의위원회”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가격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 ⑤ 위원은 안건이 제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미술관자료추천회의 및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6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위원은 안건이 제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학연 등의 이해관계로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31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미술관자료 구입) ① ~ ④ (생략) <u><신 설></u></p> <p>⑤ <u>가격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u></p> <p>제26조(미술관자료기증) ① ~ ⑤ (생략) <u><신 설></u></p> <p>⑥ (생략) <u><신 설></u></p>	<p>제22조(미술관자료 구입)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위원은 안건이 제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미술관자료추천회의 및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u></p> <p>⑥ <u>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가격평가심의위원회---</u></p> <p>제26조(미술관자료기증)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위원은 안건이 제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u></p> <p>⑦ (현행 제6항과 같음)</p> <p><u>제2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u></p> <p>1. <u>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u></p>

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학연 등의 이해관계로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제31조(위원회 회의) ① ~ ③ (생략)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31조(위원회 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